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곽규택의원·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5 발의연월일: 2024. 6. 26.

발 의 자: 곽규택・민홍철・조경태

이성권 • 박수영 • 정연욱

정진욱 • 주진우 • 박성훈

김태호 · 서지영 · 김정호

김태선 • 허성무 • 김대식

김도읍 • 백종헌 • 조승환

정동만 · 정성국 의원

(20일)

제안이유

낙동강 표류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낙동강 하류 일부 지자체의 수질은 일정기간 TOC 기준 IV등급 이하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고, 정부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30년간 22조 원 이상을 투입하였으나 한강, 금강, 영산강 수계와 비교하면 수질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수질이 더욱 악화되어 TOC 기준 IV등급이하인 경우가 증가하고 조류의 번성으로 독성물질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높아져 가는 상황임.

이에 취수원수 다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취수원수를 확보하여 수돗물 정수생산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수돗물의 신뢰성

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7조).
 - 1)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취수원 다변 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면제
- 라. 취수원 다변화사업으로 기존 취수시설이 이전되거나 신규로 설치되는 지역 또는 취수시설이 설치되는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을 규정함(안 제3장).
 - 1) 영향지역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영향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과 수혜지역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

금을 재원으로 하는 영향지역 지원지금 설치

2) 영향지역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영향지역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와 관할 시군이 부담하는 취수량에 따른 부담금을 재원으로 정비사업 시행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동강 유역의 수질오염 사고 발생 위험 등으로 부터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 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 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 2.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 3.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 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일반수도사업자"란 「수도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5. "복류수(伏流水)"란 하천, 호소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바닥면 아 래나 옆면의 모래자갈층 등의 속을 흐르는 물을 말한다.
- 6. "강변여과수"란 하천, 호소 또는 그 인근지역의 모래자갈층을 통과한 물을 말한다.
- 7. "취수원 다변화"란 수질오염 사고 발생 위험 등으로부터 지역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취수시설을 타지역으로이전 또는 신규로 설치되거나, 강변여과수 또는 복류수 등을 개발하여 취수원 또는 취수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을 말한다.
- 8.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란 제7호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9. "영향지역"이란 취수원 다변화사업으로 기존 취수시설이 이전되 거나 신규로 설치되는 지역 또는, 강변여과수 및 복류수 등의 취 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 다.
- 10. "수혜지역"이란 영향지역으로부터 취수원 다변화사업을 통해 상수원을 공급받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1.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 조성 및 먹는 물의 가치 향상
 - 2.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

- 3. 먹는 물에 대한 주민불안 해소 및 안정적인 물이용 보장을 통한 낙동강유역 물 문제 해소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낙동 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도법」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 2.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제2장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 시행

-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하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구·산업·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 2.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수요 예측
 - 3.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경제성·타당성과 그 밖의 관 련 사항의 평가
 - 4. 기존 취수시설의 수질현황 분석 및 그 유역의 수질개선대책
 - 5. 복류수·강변여과수 등 취수시설의 수질현황 분석 및 그 유역의 수질관리대책
 - 6. 복류수·강변여과수 등 취수시설 설치 예정지역 및 장애물
 - 7.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개략적인 관로노선 및 취수시

설 등의 배치계획

- 8.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 9.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10.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11. 환경의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 12. 지진 대책
- 13. 그 밖에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수도법」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⑤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으로 본다.
- 제9조(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시행자) ①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낙동 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 ② 국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및 변경에 관하여는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를 준용한다.
 -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자원의 개발사업으로 본다.
- 제11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협의·승인·허가·인가·동의·해제·결정·신고·지정·면허 ·심의·처분·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과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 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1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 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1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49 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12.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墳 墓)의 개장(改葬) 허가
- 14.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 15.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 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 1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 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제3장 영향지역 등에 대한 지원

- 제12조(영향지역 지원사업)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향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영향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영향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향지역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향지역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영향지역 지원사업 재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의한 지원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향지역지원기금(이하 "지 역지원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지역지원기금의 재원은 제21조에 의한 물이용부담 금으로 한다.
- 제14조(지역지원기금 운용위원회 설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지역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지

- 원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 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물정책을 담당하는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자
- 2. 대체상수원 지역의 시장·군수, 주민대표
- 3. 수혜지역의 수도사업자
-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③ 위원회의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영향지역 수질개선) ① 환경부장관,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영향지역의 수질개선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 또는「수도법 시행령」제6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시·도지사는 영향지역을「수도법」제7조에 의한 상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광역·기초자치 단체장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 하고, 수질개선사업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의 종류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사업재원은 제21조에의한 물이용부담금 및 「물환경보전법」 제69조에 의한 국고보조금등으로 한다.
- 제16조(영향지역 정비사업) ① 영향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취

수원 개발기간에 영향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정비사업(이하 "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제8조에 따른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9조의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와 지역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영향지역 정비사업 재원) ① 제16조의 따른 지역정비사업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일일취수시설용량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한다.
 - 1. 취수량 일 10만세제곱미터 이상 20만세제곱미터 미만 : 200억원이하
 - 2. 취수량 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 : 300억원이하
 - 3. 취수량 일 30만세제곱미터 이상 : 400억원 이하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은 제9조의 사업시행자가 100분의 90을 부담하고, 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가 100분

- 의 10을 부담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의 구체적인 부담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추진단의 설립·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진단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9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 영향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제20조(수혜지역의 상생협력 노력) 수혜지역의 일반수도사업자는 영향 지역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은 물론 대체상수원 지역의 농 산물 구매, 관광활성화 사업 등을 통하여 이들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 제21조(물이용부담금의 사용특례 및 원칙 등) ①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따라 수혜지역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사용용도 등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의한 영향지역지원사업과 제15조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영향지역지원사업에 30% 이상 분담하고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수계의 여건 및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이 낙동강 본류의 강변여과수 혹은 복류수인 경우에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제22조(물이용부담금의 지역 형평성)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의한 영향지역지원사업과 제15조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하되, 이 경우 한강, 금강, 영산강 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평균금액의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3조(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① 환경 부장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제3조에 따른 취수원 다변화 사업

- 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장기간 소요됨과 취수원 다변화 사업으로 인하여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감안하여 낙동강 수질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존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21조의 물이용부담금의 조정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3조의 지역지원기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제24조(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시

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이하 "실시계획의 승인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 2.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3.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4. 사정이 변경되어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등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과태료)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